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46호  
나. 발 의 자 : 김경 의원 외 8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2. 제안이유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축하며, 현행 조례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대한 자격, 업무범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을 적용받는바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실시한 자문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제8항)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동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시하여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 ⑦ (생략)  <신설>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2023년 3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책이 신설되었음.
- 해당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1)에 따른 자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결과 보고서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지난 2024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지급 근거인 월별 활동내역이 활동명과 참석자만을 기재하는 약식 형태이고 자문의 내용과 자문에 따른

1)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조례에서 요구한 결과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기존 서울브랜드총괄관 활동내역 예시 >**

일자	담당부서	유형	자문· 활동 사항
****	서울브랜드담당관	자문	내 용 : 신규캐릭터 홍보 관련 자문 참 석 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캐릭터마케팅팀장
****	서울브랜드담당관	자문	내 용 : 신규캐릭터 홍보물 제작 관련 자문 참 석 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비전특보, 브랜드기획팀장, 캐릭터마케팅팀장
****	서울브랜드담당관	자문	내 용 : 신규캐릭터 홍보 관련 자문 참 석 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비전특보, 브랜드기획팀장, 캐릭터마케팅팀장

- 따라서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결과 보고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향후 시행규칙 제정, 방침 수립 등 민간전문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홍민지(2180-8118)
------	----------------	-------	----------------

의안번호  
2246

##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경, 김기덕, 박승진, 서준오, 유정희, 이상훈, 이용균, 이원형, 최기찬의원	2024.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b>&lt;개정 필요성&gt;</b>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b>&lt;주요 입법 요지&gt;</b>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실시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8항)				
추진경과	○ 2024.10.16.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김경 의원 대표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특이사항 없음				
대응방안	○ 조례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상 임 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서울브랜드담당관	팀장	브랜드기획팀장 박미란(☎2133-6187)	담당	행정6급 신유미 (☎2133-6194)